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68호 2021. 7. 15.(목)

선	기관의 장
람	

【공 고】

제2021-1495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3
제2021-1518호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

【고 시】

제2021-1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3
제2021-10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4
제2021-1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21-110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1
제2021-11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3
제2021-11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28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 ☎ 041-840-254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 폐기 및 신조 공인 내역

소 관 부서명	구분	공인명	인 영	규 격 (cm)	사 유	효 력 발생일
자원순환과	신조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관인		2.0×2.0 (정방형) / 훈민정음체 /목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2021. 7. 16일자 사용개시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 훈민정음체 /목재		

소 관 부서명	구분	공인명	인 영	규 격 (cm)	사 유	효력 발생일
사곡면	폐기	공주시사곡면장인 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1×2.1 전서체	통합증명발급기 교체에 따른 공인 변경	2021. 7. 16일자 폐기
		공주시사곡면장인 제2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4×2.4 전서체		
	신조	공주시사곡면장인 제1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1×2.1 훈민정음체		2021. 7. 16일자 사용개시
		공주시사곡면장인 제2통합증명발급전용		우레탄 2.1×2.1 훈민정음체		

공주시 공고 제2021-1518호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감사담당관실(감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87 / FAX : 041-840-2308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및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시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 사이버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시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 감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공주 월송 B-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공주시 월송동 669번지
3. 사업주체
 - 상호 : (주)화성개발 대표 도훈찬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침산동, 파크드림 갤러리)
4. 사업계획승인일 : 2021. 6. 29
5.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9,887.6㎡
 - 건축규모 : 주4, 지하1/지상 20층, 303세대
 - 주택형별 : 84.9739㎡(84형 287세대), 84.9739㎡(84형 최상층 16세대)
 - 건축면적 : 3,542.4035㎡
 - 연면적 : 48,781.0267㎡
 - 사업기간 : 2021. 8. ~ 2023. 12.
6. 의제사항
 - 건축법(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 도로법(도로점용허가)

공주시 고시 제2021-10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공주시 석장리동 11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8547), 문화재과 석장리 박물관팀(☎ 041-840-89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도 (1/5,000) : 게재생략
3. 지형도면고시도 (1/5,000) : 게재생략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석장리 박물관	문화 시설	석장리동 118번지 일원	-	증) 16,836	16,836	-	

■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보전관리지역	20.0%이하	80.0%이하	4층이하
계획관리지역	40.0%이하	100.0%이하	
농림지역	20.0%이하	80.0%이하	-

※ 금회 신설부지는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개별 건축물 입지시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석장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신설 - 위치 : 석장리동 118번지 일원 - 면적 : 16,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시설 신설

공주시 고시 제2021-1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옥룡동 2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대학교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주시 옥룡동 201번지 일원	62,566	-	62,566	' 80.5.20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19	-	옥룡동 201 일원	62,566	-	62,566	' 80.5.20	
교육시설	-	재외동포 교육원 등		19,398	증)3,923	23,321		
운동시설	-	운동장 및 양궁장 등		8,691	증)356	9,047		
녹지시설	-	녹지 등		24,871	감)3,651	21,220		
공공시설	-	도로 및 주차장 등		9,606	감)628	8,978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교육시설	○ 면적 증가 : 19,398㎡ → 23,321㎡ 증) 3,923㎡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특수학교시설 증축으로 면적 증가
	운동시설	○ 면적 증가 : 8,691㎡ → 9,047㎡ 증) 356㎡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특수학교시설 증축으로 면적 증가
	녹지시설	○ 면적 감소 : 24,871㎡ → 21,220㎡ 감) 3,651㎡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특수학교시설 증축으로 면적 감소
	공공시설	○ 면적 감소 : 9,606㎡ → 8,978㎡ 감) 628㎡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특수학교시설 증축으로 면적 감소

2) 시설물배치계획

(단위 : m²)

기 정	변 경	건 물 명		층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①	①	예술관	예술관	4(1)	4(1)	537.16	-	537.16	2,009.10	-	2,009.10
		유아교육관	유아교육관	4(1)	4(1)	765.76	-	765.76	3,129.90	-	3,129.90
		계				1,302.92		1,302.92	5,139.00		5,139.00
②	②	대학본부 /간호관	대학본부 /간호관	4	4	1,379.52	-	1,379.52	3,957.12	-	3,957.12
		계				1,379.52		1,379.52	3,957.12	-	3,957.12
③	③	학생회관	학생회관	3(1)	3(1)	1,137.67		1,137.67	3,022.46	-	3,022.46
		문화관	문화관	4(1)	4(1)	1,007.99		1,007.99	4,374.61	-	4,374.61
		공학관	공학관	4(1)	4(1)	908.60	-	908.60	4,073.98	-	4,073.98
		정보관	정보관	4(1)	4(1)	821.95	-	821.95	3,852.41	-	3,852.41
		계				3,876.21		3,876.21	15,323.46		15,323.46
④	-	학생생활관	-	5	-	510.12	감)510.12	-	2,327.51	감)2,327.51	-
		계				510.12	감)510.12	-	2,327.51	감)2,327.51	-
⑤	⑤	한민족교육 문화원	한민족교육 문화원	4(1)	4(1)	1,000.00	감)1,000.00	-	4,500.00	감)4,500.00	-
		계				1,000.00	감)1,000.00	-	4,500.00	감)4,500.00	-
⑥	⑥	테니스관리동	-	1	-	58.80	감)58.80	-	58.80	감)58.80	-
		정문수위실	정문수위실	1	1	64.65	-	64.65	35.30	-	35.30
		계				123.45	감)58.80	64.65	94.10	감)58.80	35.30
-	⑦	-	사범대부실 특수학교	-	3	-	증)5,341.03	5,341.03	-	증)11,788.61 (9,525.30)	11,788.61 (9,525.30)
		계				-	증)5,341.03	5,341.03	-	증)11,788.61 (9,525.30)	11,788.61 (9,525.30)
		합 계				8,192.22	증)3,771.11	11,964.33	31,341.19	증)4,902.30 (2,638.99)	36,243.49 (33,980.18)
건폐율		기정		8,192.22 / 62,566 * 100 = 13.09% (자연녹지지역 법정 20%)							
건폐율		변경		11,964.33 / 62,566 * 100 = 19.12% (자연녹지지역 법정 20%)							
용적률		기정		(31,341.19-2,603.48) / 62,566 * 100 = 45.93% (자연녹지지역 법정80%)							
용적률		변경		(33,980.18) / 62,566 * 100 = 54.31% (자연녹지지역 법정80%)							

주: ()내는 지상층연면적임 (용적률산정)

■ 시설물 배치계획(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학 교	○ 연면적증가 : 31,341.19㎡→36,243.49㎡ (증 4,902.30㎡)	○ 사범대부설 특수학교 증축에 따른 면적 변경 - 학생생활관 철거 : 감 2,327.51㎡ - 테니스관리동 철거 : 감 58.80㎡ - 한민족교육문화원 건축 폐지 : 4,500㎡ - 사범대부설특수학교 증축 : 증11,788.61㎡

3) 세부 건축시설 계획

구 분	명 칭 (변경)	층 수		면 적(㎡)		용 도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당 초	변 경
기 존 건 물	예술관	지하1F	지하1F	144.00	144.00	기계실	기계실
		1F	1F	537.16	537.16	실습실	실습실
		2F	2F	508.00	508.00	"	"
		3F	3F	508.00	508.00	"	"
		4F	4F	311.94	311.94	"	"
		계	계	2,009.10	2,009.10		
	유아교육관	지하1F	지하1F	217.50	217.50	강당	강당
		1F	1F	731.25	731.25	유아실	유아실
		2F	2F	731.25	731.25	유아실, 행정실	유아실, 행정실
		3F	3F	731.25	731.25	유아실, 실습실	유아실, 실습실
		4F	4F	718.65	718.65	연구실, 실습실	연구실, 실습실
		계	계	3,129.90	3,129.90		
	대학본부 /간호관	1F	1F	549.72	549.72	행정실	행정실
		2F	2F	1,379.52	1,379.52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3F	3F	1,379.52	1,379.52	"	"
		4F	4F	648.36	648.36	"	"
		계	계	3,957.12	3,957.12		
	학생회관	지하1F	지하1F	54.00	54.00	기계실	기계실
		1F	1F	992.02	992.02	식당, 매점	식당, 매점
		2F	2F	974.41	974.41	실습실, 회의실	실습실, 회의실
		3F	3F	1,002.03	1,002.03	컨벤션홀	컨벤션홀
		계	계	3,022.46	3,022.46		
	문화관	지하1F	지하1F	462.22	462.22	기계실	기계실
		1F	1F	981.51	981.51	행정실, 기숙사	행정실, 기숙사
		2F	2F	976.96	976.96	기숙사	기숙사
		3F	3F	976.96	976.96	"	"
		4F	4F	976.96	976.96	"	"
		계	계	4,374.61	4,374.61		
	공학관	지하1F	지하1F	486.20	486.20	체육시설	체육시설
		1F	1F	908.60	908.60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2F	2F	908.60	908.60	"	"
		3F	3F	885.29	885.29	"	"
4F		4F	885.29	885.29	"	"	
계		계	4,073.98	4,073.98			

구분	명칭 (변경)	층 수		면적(m ²)		용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당초	변경
기존 건물	정보관	지하1F	지하1F	595.66	595.66	기계실	기계실
		1F	1F	790.90	790.90	열람실	열람실
		2F	2F	821.95	821.95	"	"
		3F	3F	821.95	821.95	"	"
		4F	4F	821.95	821.95	"	"
		계	계	3,852.41	3,852.41		
	학생생활관	지하1F	-	143.90	-	기계실	-
		1F	-	438.90	-	기숙사	-
		2F	-	438.81	-	"	-
		3F	-	435.30	-	"	-
		4F	-	435.30	-	"	-
		5F	-	435.30	-	"	-
	계	-	2,327.51	-			
	테니스관리동	1F	-	58.80	-	테니스 관리동	-
	정문수위실	1F	1F	35.30	35.30	수위실	수위실
	한민족교육 문화원	지하1F	지하1F	500.00	-		
		1F	1F	1,000.00	-		
		2F	2F	1,000.00	-		
		3F	3F	1,000.00	-		
		4F	4F	1,000.00	-		
		계	계	4,500.00	-		
증축 건물	사범대부설 특수학교	-	지하1F	-	2,263.31		교실,식당,기전실
		-	1F	-	2,713.81	-	교실,기숙사,체육관, 소극장,도서관,카페
		-	2F	-	3,198.17	-	교실,기숙사
		-	3F	-	3,613.32	-	교실,기숙사
		-	계	-	11,788.61	-	
합 계				31,341.19	40,292.47	- 지하면적(당초) : 2,603.48m ² - 지하면적(변경) : 4,722.89m ²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공주시 청룡리 9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 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변경)도 (1/5,000) : 게재생략
3. 지형도면고시도 (1/1,200) : 게재생략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보건위생시설

■ 도축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보건위생시설 (도축장)	의당면 청룡리 911번지 일원	-	증) 9,652	9,652	-	

■ 도축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축장	○ 보건위생시설(도축장) 신설 A = 9,652m ²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되기 이전에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인 도축장으로서 신선한 돈육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양돈산업의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50-44 외 3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43-13, 43-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50-44	2021 0715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43-3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50-86	2021 0715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43-3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50-88	2021 0715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25-8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431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96-2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0-34 (월송동)	2021 0715	신규	2010 0202	지역특성 반영	
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172-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256-11	2021 0715	신규	2010 0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12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송선군로 635	2021 0715	신규	2010 0112	오룡리 마을에 문화유적인 송선군묘가 있어 송선군로라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62-4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383-33	2021 0715	신규	2010 0112	인근에 영규대사묘가 있어 영규대사로로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62-4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383-37	2021 0715	신규	2010 0112	인근에 영규대사묘가 있어 영규대사로로 부여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62-5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383-58	2021 0715	신규	2010 0112	인근에 영규대사묘가 있어 영규대사로로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248-21	2021 0715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188-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535-8	2021 0715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13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17-16	충청남도 공주시 창벽로 206 (소학동)	2021 0715	신규	2010 0112	자연마을 명칭 반영	
14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439-1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농공단지길 45-21 (월미동)	2021 0715	신규	2013 1023	월미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5-85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0 (상왕동)	2021 0715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57-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고비고개길 10-14	2021 0715	신규	2010 0112	마암~내흥 사이의 고개이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비고개 길이라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490-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순길 53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31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안길 46-64	2021 0715	신규	2010 0112	내문리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내문안길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동 523-1	충청남도 공주시 느랏티길 28-46 (무릉동)	2021 0715	신규	2010 0112	느랏 뒤에 있는 고개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144-1	충청남도 공주시 다래울1길 21-30 (월송동)	2021 0715	신규	2010 0112	매봉재에 다래 넝쿨이 우거져 있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67-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곡길 1-29	2021 0715	신규	2010 0112	동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동곡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345-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막마을길 94-46	2021 0715	신규	2010 0112	옛날에 산막이 많았던 곳으로 동쪽의 산막마을이라 하여 동막마을길로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727-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만마름길 192-50	2021 0715	신규	2010 0112	안영리를 관통하는 길의 고개 정상 이름이 만마름이라 만마름길로 부여	
24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173	충청남도 공주시 명탄서원길 53-5 (월송동)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백룡리 604-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모실길 102-11	2021 0715	신규	2010 0112	용못 남쪽 산안에 마을이 있다하여 모실 또는 모곡이라 불리운다하여 모실길로 부여	
2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339, 585-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직골길 41-22	2021 0715	신규	2010 0112	뒷동산 형국이 사자형이라고 한다하여 사직골길로 부여	
2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35, 35-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길 76	2021 0715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 반영	
2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12-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윗난대이길 147-17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4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66	2021 0715	신규	2010 0202	예전 의당리를 대표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길로 부여	
3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오동리 213-5, 213-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장개오동길 204-5	2021 0715	신규	2010 0112	죽당리 장개울이란 마을과 오동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자연마을 명칭과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장개오동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3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610-1	충청남도 공주시 장승배기길 100-36 (웅진동)	2021 0715	신규	2010 0112	역사적특성 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46-4, 446-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129	2021 0715	신규	2010 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어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3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598-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월산길 170-4	2021 0715	신규	2010 0112	월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 구역 명칭을 복합 활용	
34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조평리 300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조평소골길 35-99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구역 명칭 첨가	
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25-5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30	2021 0715	신규	2010 0202	일련번호방식과 도로특성 반영	
3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452-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1 길 41-8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행정구역명과 장터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장터길로 부여	
3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212-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화장마을길 46-32	2021 0715	신규	2010 0202	꽃이 많이 피는 마을이었다 하여 화장마을길로 부여	
38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251-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화장마을길 46-34	2021 0715	신규	2010 0202	꽃이 많이 피는 마을이었다 하여 화장마을길로 부여	
3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27-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활원길 47-60	2021 0715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1길 101-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369-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369-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1길 10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1길 101-1	2021.06.30	건축물대장 관련지번 정정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7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71-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호북동길 4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호북동길 46	2021.07.01	관련지번 정정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71-2, 271-10, 271-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27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호북동길 48-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호북동길 48-1	2021.07.01	관련지번 정정	
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12, 385-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23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 233	2021.07.02	재건축에 의한 관련지번 정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880-2, 산4-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880-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2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성곡길 232	2021.07.13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관련지번 정정	